

- 학생 학습권 보장 및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전환 -

2022 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계획



함열여자고등학교

<http://hygchs.hs.kr>

목 차

I. 추진 목적 및 방향	1
II.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III.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의 유형 및 방법	3
IV. 출결 관리	5
V.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8
VI. 학생 심리 지원	10
VII.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11
VIII. 기대 효과	11
□ 서식	12

원격수업 기본방향

- 학생 학습권 보장·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한 원격수업 운영 및 대체학습 제공
- 2022년 원격수업을 미래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전환 관점으로 운영

I 추진 목적 및 방향

□ 추진 목적

- 에듀테크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 블렌디드 학습 활동을 통해 미래교육의 변화를 선도
- 원격·등교수업 병행 등 학습상황에 맞는 수업을 통해 학습의 질 제고 및 학생의 학습성취 고양
-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쌍방향 소통에 기반을 둔 수업을 통해 디지털기반 미래교육 학습활동 강화

□ 추진 방향

- 원칙적으로 학급별 시간표를 기준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콘텐츠활용수업, 과제형수업을 병행함
- 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개별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 결손 방지
- 대면·비대면 수업 간 유기적 연대를 통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 체계적이면서 협력적인 교사-학생-학부모 간 관리형 온라인 학습 지원
- 정기적 학생 학습 환경 상담 및 정서적 관리를 통한 지도
- 외부 자료 또는 기 제작된 학습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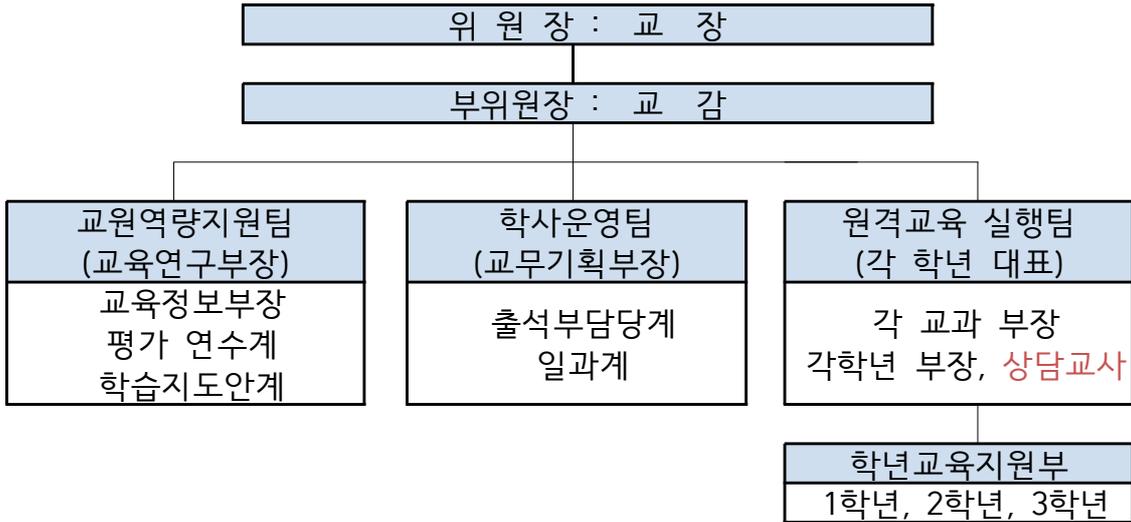
□ 근거법령 및 주요지침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2항, 제24조 제3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462, 2022.1.26.)
- 2022학년도 중등(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방안(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2730(2022.02.21.))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학교교육과-3352, 2022.2.25.)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시행 2022.3.25.)(법률 제18459호, 2021.9.24.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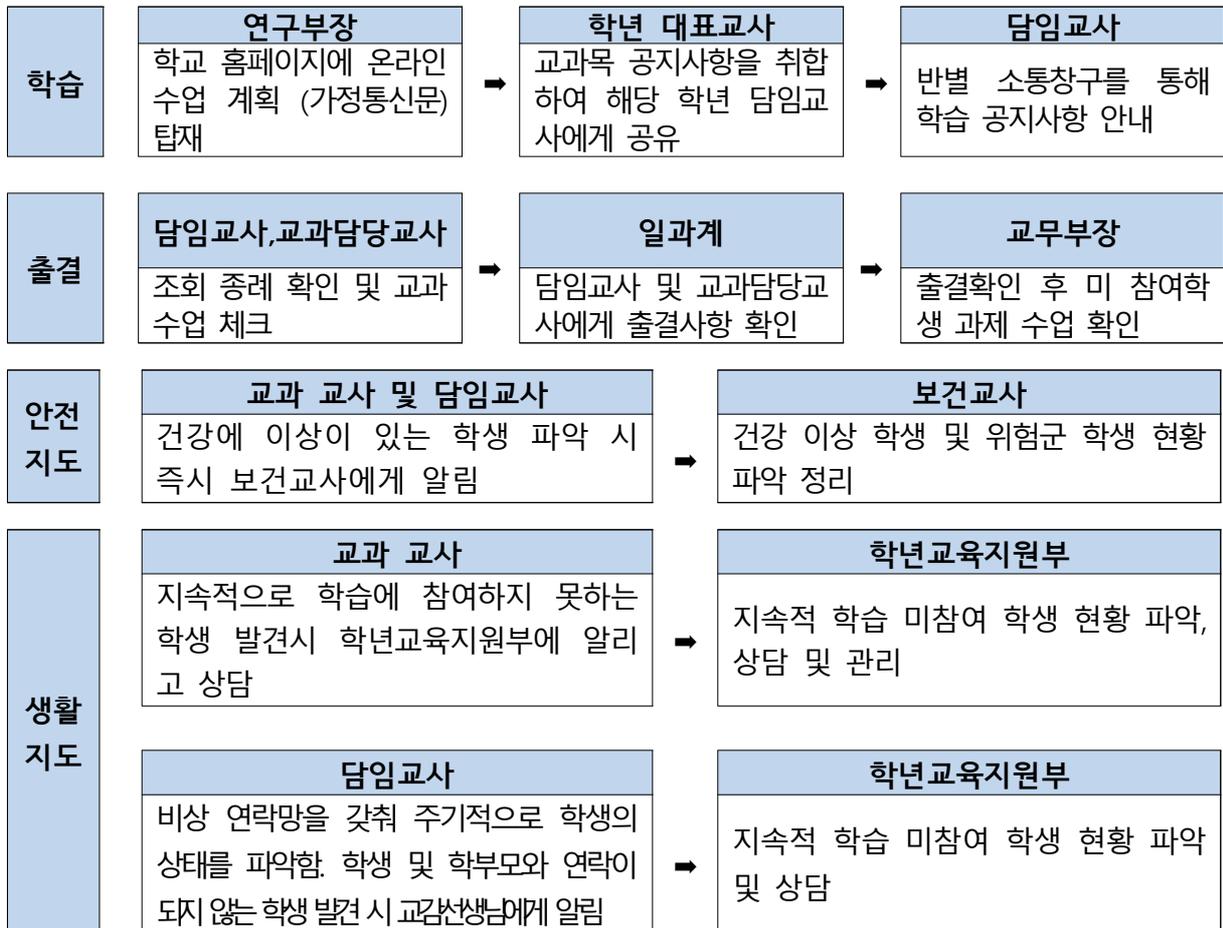
II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구성



□ 원격수업 운영 흐름도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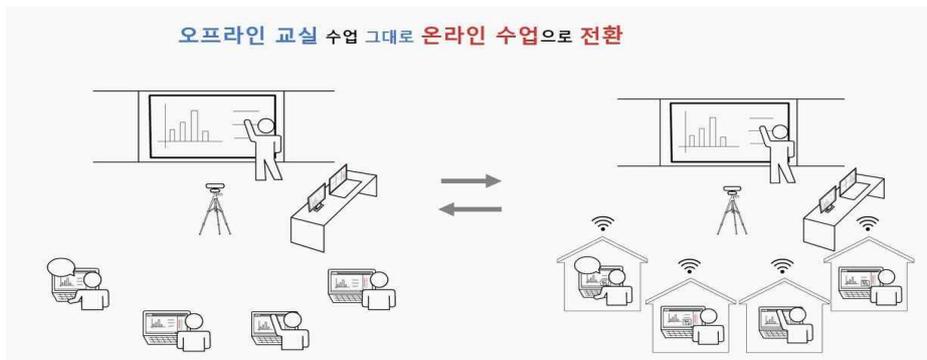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의 유형 및 방법

□ 2022. 등교중지 학생 대상 온·오프라인 실시간 혼합형(블렌디드) 수업 운영

구 분	운영 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화상 수업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 혹은 교사가 제작한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 확인 및 피드백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실시간 채팅 등 활용 	
혼합수업	원격수업 간 혼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활용수업(예습)+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 과제수행형 원격수업 콘텐츠 활용수업+과제수행형 원격수업+쌍방향 원격수업
	등교수업+원격수업 간 혼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수업(예습학습) + 등교수업(피드백, 프로젝트학습 등) 모형 등교수업(핵심개념학습) + 원격수업(확인과제학습.피드백) 모형

- 등교학생과 등교중지 학생이 온·오프라인 연계 실시간으로 수업 참여
- 등교중지 학생에게도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Google)을 통해 해당 차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원칙: 대면수업에 준하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 수업 운영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 수업 예시]

- 실시간 화상 강의(10분) + 수업 관련 콘텐츠 시청 (5~10분) + 학습과제 수행 및 탑재 (10분) + 실시간 화상 학생별 피드백, 평가, 학습 정리(10~15분)
- ※ 학습과제 : 인터넷 자료 탐색 및 에듀테크 활용 과제 탑재 (예: 패들렛, 구글 Workspace 등)
- ※ 온라인 상호작용 : 온라인 수업 놀이, 온라인 협업 활동 등

[유의사항]

- 원격수업은 사전에 편성된 수업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상의 시간표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화상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과 상호작용·피드백하며 운영하는 수업을 말함.
- 단편적인 콘텐츠 제공, 과제 수행 중심만으로 원격수업이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맞춤형 피드백 제공

- 학습동기 독려 및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 활성화

- 개별 교사가 학생의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등교·원격수업 전후로 **대면, 유선,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학생 피드백** 실시

□ **수업량**

-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 수업 시간에 준하여 운영
- 수업량에는 원격수업 준비시간, 교사의 수업 시간, 원격토론, 학습보고서 작성 등 학생 과제수행 및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운영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온·오프라인)'은 이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하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칙으로 함

□ **대체학습**

- 등교중지 학생(확진, 자가격리 등) 이나 불가피하게 학급 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충실한 대체 학습 제공
- 교실 수업 장면 실시간 화상 제공, 온라인 콘텐츠 제공, 학습과제 제공

유형	학사유형에 따른 대체학습 제공 유형	
일부 등교 + 일부 대체 학습	개인단위 등교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에듀테크 활용* 교실 수업장면을 실시간 화상으로 제공 ▶ 수업장면 실시간 화상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교실수업장면 녹화물, 온라인 콘텐츠 또는 학습과제 제공
원격 수업	학급단위 등교중지	▶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 시 접속 불량, 온라인 사각지대 학생 등 수업 참여가 어려울 때 교실수업장면 녹화물, 온라인 콘텐츠 또는 학습과제 제공

□ **원격수업 운영 시간표**

교시(시간)	과목명	원격 소통 도구	비고
조회(08:20~08:35)		Google 클래스 화상 조회 (ZOOM)	담임교사
1교시(08:35~09:25)	학급별 시간표 운영	Google 클래스, ZOOM 또는 실시간 상호작용 및 피드백 원격 도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	교과교사
2교시(09:35~10:25)			교과교사
3교시(10:50~11:40)			교과교사
4교시(11:50~12:40)			교과교사
중식(12:40~13:40)			담임교사
5교시(13:40~14:30)	학급별 시간표 운영		교과교사
6교시(14:40~15:30)			교과교사
7교시(15:40~16:30)			교과교사
8교시(16:40~17:30)	방과후시간표		담당교사
종례		Google 클래스 화상 종례 (ZOOM)	담임교사

※ **확진자 발생으로 학급의 학생이 모두 조퇴하여 학급단위 원격수업이 운영될 시 해당학급 수업은 조퇴 이후 수업부터 즉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으로 전환함.**

IV

출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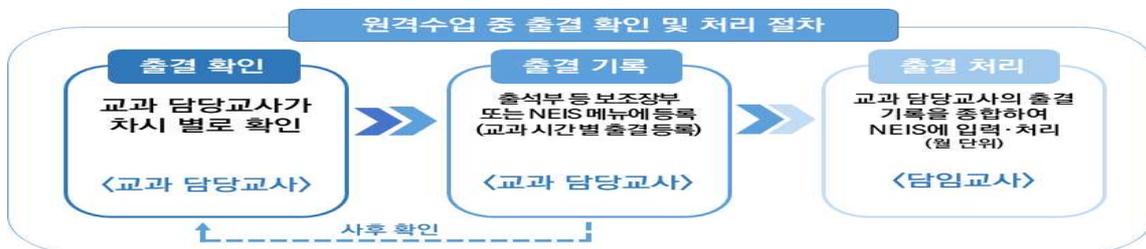
기본 원칙

- 등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규정을 따름
- ※ 적용 기간은 2022년 3월 14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1. 출결 처리(공통)

- 1) 당일 출결 확인을 원칙. 수강 독려 및 학부모 소통은 교과 교사가 실시
- 2) 교과 교사는 수업 종료 이후, 일괄적으로 결과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안내.
- 3) 담임교사가 나이스 출결 처리

2. 출결 확인



- 1)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단위 실시, **최종 3일(수업일 기준)** 내 확인
예) 금요일 수업일 경우, 화요일까지 최종 출결 확인
- 2)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접속 불가 등으로 대체 학습 제공 시 3일)**
- 3)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외의 수업 유형은 **원칙적 당일(최종 3일 내)** 확인
- 출결확인 기간(3일, 수업 당일 포함 수업일수 기준)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 4)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처리
-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단위 출결(마감)** 처리
- 실시간 조·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 관리와 별도로 운영**
(NEIS에 반영하지 않음)

3.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확인 방법

수업 유형	출석 확인 방법								
	실시간 교사 확인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 방법*					기타(대체 확인)		
		학습 시작일	진도율	접속 기록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SNS/ 메시지**	대체 학습	증빙자 료
실시간 쌍방향	○	○	○	○	○	○	○	○	○
콘텐츠 활용		○	○	○	○	○	○	○	○
과제 수행		○	○	○	○	○	○	○	○
확인(인정) 기간	당일***	원칙적으로 당일(최종 3일(수업일 기준) 내)							

* 구글 클래스룸,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MS팀즈 등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접속불가 사실 소통(대체학습 부여) / 이외 유형: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이 어려운 경우 수강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접속 불가 등의 사유로 대체학습을 부여한 경우 3일(수업일 기준) 내

4. 대체 학습 출석 처리

- 1)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 한해 제공한 **대체 학습(학습 자료 및 과제)**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2) 접속 불량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학생은 상황 발생 즉시 교사와 소통하고, 교사는 **당일 대체 학습을 부여하여 출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함**
- 3) SNS,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접속 불가 사실 확인 후 대체 학습을 부여한 학생에 한하여 출석 처리 가능

5. 등교수업 기간 중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관리

- 1)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학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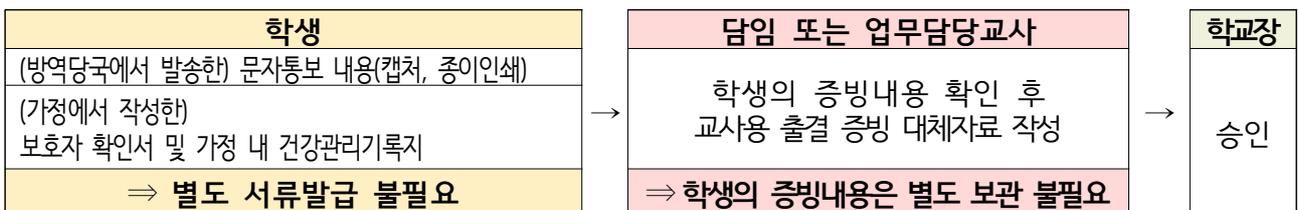
- 2)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생이 속한 해당 학급의 수업을 들을 때만 유효함
대다수의 학생은 등교수업하고,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원격 송출하는 것은 대체학습 일환으로 간주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3)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 교사의 출결증빙 대체자료 원본은 첨부물 분리등록 등을 통해 보관토록 함

- (범위)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통보 주체	유형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 ²⁾ 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확진자 [① 참고]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단위 학교	학생 본인이 접촉자 ¹⁾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1차)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2,3차)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고위험 기저질환 그 외 [② 참고]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 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방역 당국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 ³⁾ [③ 참고]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수동감시(10일) 대상자로서, 3일 이내(확진자검체일기준) PCR(또는 지정의 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1)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2)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지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3)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검사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임. 또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고 그 외 동거인은 추가격리없음(질병관리청, '22.3.1.)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가정학습 신청 학생 :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V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 학생평가 기본원칙

- 원격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

-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은 '함열여고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따르며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지필평가 횟수·수행평가 반영비율 조정 등을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결시생 성적처리 :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함열여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 ①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②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를 확인
 - ※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및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 ③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검사 도구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

*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참 등)

※ 확진 후 격리해제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있으나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코로나19 백신 접종 :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평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 학습평가과-7361(2021.11.11.))

□ 학생부 기록 기본 원칙

-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하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불가
-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 가능

-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일괄입력’ 기능을 활용하여 전체 학생에 대해 해당 학급의 2022학년도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입력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
 - ※ 개인별 원격수업 참여일수가 아닌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입력하며, 위탁학생 또한 위탁 기관이 아닌 ‘소속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입력함

	내 용	원격수업일수 포함여부
사례1	홀수학급 등교수업(하루 종일), 짝수학급 원격수업(하루 종일)	짝수학급만 원격수업일수 포함
사례2	홀수번호 등교수업(하루 종일), 짝수번호 원격수업(하루 종일)	짝수번호만 원격수업일수 포함
사례3	하루 중 오전 등교수업, 오후 원격수업	미포함
사례4	등교수업 기간 중 등교중지 학생들에게 별도 원격수업(대체학습) 제공	미포함

- 3학년은 대입전형자료 생성(수시·정시) 시 학생부 마감일(생성 기준일, 별도 안내 예정)기준으로 원격수업 운영 일수 입력 후, 졸업 시 2022학년도 전체 원격수업 운영 일수로 수정 입력
- 단, 전출입, 재·편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해당 학생을 기준으로 원격수업일수 입력

- ① (전출입) 전출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와 전입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전출입교에서 각각 구분하여 입력*
 - * (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전출일 까지)”(전출교에서 입력), “원격수업일수 00일(전입일 이후)”(전입교에서 입력)
 - ※ 학생 전출 시, 출결 특기사항에 해당 학생의 원격수업일수를 입력하여 전송
- ② (재·편입학) 재·편입학 시부터 학생부 마감일(진급, 졸업, 대입전형자료 생성 시)까지의 원격수업 일수 입력*
 - ※ 2020학년도 학업중단 후 2021학년도 재·편입학 한 경우, 2020학년도 학업중단 이전과 재·편입학 이후의 원격수업 일수를 각각 입력(중복기간 미삭제)
 - * (입력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학업중단 일까지), 원격수업일수 00일(재입학/편입학/복학 이후)
- ③ (학업중단) 원격수업 시작일부터 학업중단일까지의 원격수업일수 입력

VI 학생 심리 지원

- 학급 소통 강화
 - 원격수업 시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 교사-학생,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여 사회성 함양 및 정서발달 도모
 -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한 학급회의, 온라인 학급 특색 활동 등
 -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등교수업 시에는 담임교사의 직접 관찰을 통해, 원격수업 시에는 담임(교과)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다양한 비대면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 및 심리상태 확인
- 학생 맞춤형 개별상담
 - 학생 개별 상담
 - 전문상담(교)사는 상담 수요조사 또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파악하여 상담 지원
 - 격리학생 심리지원
 - 불안, 우울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경우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외부 전문 상담기관 연계
 - 격리 경험을 이유로 따돌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구성원을 대상으로 배려·공감 교육 실시

VII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학생 및 교원 대상 교육

- 학생 교육 :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플랫폼) 등에 '수업 목적임'을 명시하고 학생에게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
- 교원 교육 :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여 개인정보(초상권 포함)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연수 실시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문구

* [저작권 경고 문구 (예시)]

저작권법(제25조3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문구 (예시)]

학교에서는 교사, 학생 등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음성, 영상, 음향 등)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예: 인터넷, 스마트폰 등) 등에서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 등에게 제공 및 공개할 경우 손해배상 등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VIII 기대 효과

-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학생 삶의 역량을 기르는 배움중심 수업의 심화
-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학생의 안전한 학습을 보장하는 원격수업 정착
-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하고 만들어가는 원격수업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
- 디지털기기·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운영으로 미래 수업 역량 강화

서식1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 대체 자료 (교사용)

<<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전자증명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

- | | |
|--------------------------------|--------------------------------|
| ① 입원·격리 통지서 | ② PCR 결과 통보서 |
| ③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 ④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 ⑤ 의심증상을 증빙하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⑥ 동거인의 PCR 결과 통보서 |
| ⑦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내역확인서 포함) | ⑧ 기타(상기 제시되지 않았으나 활용 가능한 증빙자료) |

[예시1] 학교(학년)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2022.4.)**
 업무담당교사 성명: ○○○ (서명)

학반	번호	성명	등교중지일	증빙서류	비고	담임교사 확인(서명)	학생 확인(서명)
1-2	26	김○○	4.4.	④	4.4.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2-5	29	허○○	4.12.~13.	④,⑤	4.12.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4.13. 의심증상 발현		
3-5	7	박○○	4.28.~29.	②	4.28. PCR검사 4.29. PCR 결과(음성) 문자메시지 수령		
3-7	13	윤○○	4.28.~29.	⑦	4.28. 코로나19 예방접종 4.29. 예방접종 후 발열		

[예시2] 학급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2022.4.1.~15.)**
 ○학년 ○반 담임교사 성명: ○○○ (서명)

번호	성명	날 짜															비고	학생확인(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김○○									②							4.6. PCR검사 확인	
2	안○○						③										4.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	
3	최○○								④	③							4.7.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4.8. 의심증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음성)	
중 략																		
25	길○○															⑦	4.13. 코로나19 예방접종 4.14. 예방접종 후 발열	

[예시3] 학생 개인을 기준으로 할 때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2022.1학기)**
 ○학년 ○반 담임교사 성명: ○○○ (서명)

대상	등교중지일	증빙서류	비고	학생 확인(서명)
1번 권○○	4.5.~6.	④	4.5.~6.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5.26.~27.	⑥	5.26. 동거인 PCR실시, 5.27. 결과수령(음성)	
	6.22.	④	6.22.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6.24.	⑦	6.24. 코로나19 예방접종	

<< 참고사항 >>

- 1)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 항목, 확인 기간 및 서식 등을 재구성하여 적용 가능
- 2)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발급한 문서를 통하여 출결을 확인함(대체 증빙자료 활용 불가)
- 3) 학생 확인 시, 등교중지 학생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학교별 방안 마련)
- 4) 저연령 등 학생 본인의 최종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의 최종 확인으로 대체 가능

서식2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학년 반 이름				
	1차	2차	3차	비고
날짜	(예시) 3.14.			
결과	(예시) 음성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 의심증상자가 1회 실시한 경우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보호자 성명 (서명)

※ 출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서식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년/반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본인 또는 가족 (동거인)의 해외여행력	여행자	여행일자	여행 국가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된 체온(°C) (또는 발열 여부)	정상	37.8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없음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두통					
보호자 확인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